

의안 번호	2303	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7. 1.(월) 홍영진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7. 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7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조문의 변경(안 제2조)

4. 근거법규 :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1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거법규

국가유산기본법

- 제14조(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